

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20. 12. 22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4.29. 개정 2024.12.05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, 연구, 조직운영, 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 서비스 측면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, 향후 개선방안 도출하고, 그 결과를 환류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교육 서비스’라 함은 재학생, 졸업생, 교직원, 학부모, 산업체,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본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, 취업, 상담 및 복지제공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
2. ‘교육 만족도’라 함은 유·무형의 각종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를 말한다.<개정 2024.12.05.>
3. ‘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’라 함은 대학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 대학의 유·무형의 각종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, 분석, 평가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책임과 권한

제4조 (주관부서) 조사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는 기획팀이며, 업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03.04.>

1. 조사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
2. 영역별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
3.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
4.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사후 관리

제5조 (관련부서)

① 관련부서는 대학 내 모든 부서 및 학부(과)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
2.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

② 삭제 <개정 2024.12.05.>

제3장 업무 절차

제6조 (기본계획 수립)

①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.

1. 조사 목적
2. 조사 대상
3. 조사 시기 및 일정
4. 조사 방법 및 항목
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7조 (조사 실시 및 조사 방법)

- ①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②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,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한다.

제8조 (조사 영역)

①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대상별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4.12.05.>

| 대상 | 조사 영역 |
|-----|--|
| 재학생 | - 교수 - 교육과정(교양/전공) - 행정서비스 - 학사제도 - 학생지원 - 교육환경(교육/복지시설) - 정보시스템 만족도 |
| 졸업생 | - 대학교육만족도 - 자기역량 - 현업적용도 - 직장만족도 - 대학인식 |
| 산업체 | - 인재만족도 - 직무능력만족도 - 직업기초능력만족도 - 대학인식 - 산학협력만족도 - 전반적만족도 |
| 학부모 | - 대학교육만족도 - 학생발전성 - 대학인식 |
| 교직원 | - 발전계획 - 대학경영 - 구성원인식 - 대학인식 - 전반적만족도 |

| | |
|------|--|
| 지역사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만족도 - 대학인식 - 지역사회 기여 |
|------|--|

②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조사 영역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결과보고)

주관 부서는 교육 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교내구성원과 공유한다.
<개정 2024.12.05.>

제10조 (결과활용 및 이행점검)

- ① 주관부서는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하고, 관련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을 제출해야 한다.
- ② 관련부서는 개선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.
- ③ 교육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학 발전계획 및 대학 운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 또한 조사 결과 및 개선노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노력한다.

부 칙(2020.12.22.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12.05.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1]삭제 <개정 2024.12.05.>